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94

발의연월일: 2021. 3. 18.

발 의 자 : 김승남 • 이해식 • 맹성규

이규민 · 김회재 · 안규백

이상헌 • 이개호 • 홍성국

송갑석 • 박성준 • 용혜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연월,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제조연월 등 해당 농업기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,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음.

이에 고가의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등을 취급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,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.

또한,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을 농업인이 쉽게 추적하도록함으로써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9조의2제1항 후단및 제9조의3 신설 등).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농업기계 신고 등)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(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용 표시를 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 야 한다.
 - 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농업기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9조의2(농업기계 표시의무) ① 제9조의2(농업기계 표시의무)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 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 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,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 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 -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다. <후단 신설>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 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9조의3(농업기계 신고 등)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 업자(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제9조 의2제1항에 따라 농업용 표시 를 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

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과태료) ① -----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자
- ② ③ (현행과 같음)